

The National Flag

태극기



The National Flag

태극기





목차

4 태극기의 내력

5 태극기에 담긴 뜻

6 국기에 대한 경례 방법

6 국기에 대한 맹세문

7 국기의 제작

9 국기의 계양

16 국기의 관리 및 선양

22 국민의례

23 대한민국국기법

27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38 국기의 계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58 국민의례 규정

66 태극기 자주 묻는 질문

70 알파벳 순서에 따른 국가명칭

태극기의 내력

세계 각국이 국기(國旗)를 제정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 국가가 발전하면서부터였다. 우리나라의 국기 제정은 1882년(고종 19년) 5월 22일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조인식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당시 조인식 때 계약된 국기의 형태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다만, 최근(2004년)에 발굴된 자료인 미국 해군부 항해국이 제작한 '해상국가들의 깃발(Flags of Maritime Nations)'에 실려 있는 이를바 'Ensign' 기가 조인식 때 사용된 태극기(太極旗)의 원형이라는 주장이 있다.

1882년 박영효가 고종의 명을 받아 특명전권대신(特命全權大臣) 겸 수신사(修信使)로 일본에 다녀온 과정을 기록한 「사화기략(使和記略)」에 의하면 그해 9월 박영효(朴泳孝)는 선상에서 태극 문양과 그 둘레에 8괘 대신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를 그려 넣은 '태극 · 4괘 도안'의 기를 만들어 그 달 25일부터 사용하였으며, 10월 3일 본국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고종은 다음 해인 1883년 3월 6일 왕명으로 이 '태극 · 4괘 도안'의 '태극기'(太極旗)를 국기(國旗)로 제정 · 공포 하였으나, 국기 제작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탓에 이후 다양한 형태의 국기가 사용되어 오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42년 6월 29일 국기 제작법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국기통일양식」(國旗統一樣式)을 제정 · 공포 하였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태극기의 제작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1949년 1월 「국기시정위원회」(國旗是正委員會)를 구성하여 그 해 10월 15일에 오늘날의 「국기제작법」을 확정 · 발표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태극기를 국기로 승계한 것은 태극기가 지난 이러한 민족사적 정통성을 이어받기 위함이었으며, 이후, 국기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제정 · 시행되어 오다가, 최근 「대한민국국기법」(2007. 1월)과 동법 시행령(2007. 7월) 및 「국기의 계양 ·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2009. 9월)이 제정되면서 그 입지를 더욱 공고히하게 되었다.



문화재 등록 태극기 18점(문화재청 고시)

태극기에 담긴 뜻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太極旗)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되어 있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운데의 태극 문양은 음(陰 : 파란색)과 양(陽 : 빨간색)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네 모서리의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爻 : 음 - -, 양-)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 가운데 건괘(乾卦 : ☰)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을, 곤괘(坤卦 : ☷)는 땅을, 감괘(坎卦 : ☵)는 물을, 이괘(離卦 : ☶)는 불을 상징한다.

이들 4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사용하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희구하는 한민족(韓民族)의 이상을 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태극기에 담긴 이러한 정신과 뜻을 이어받아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이루하고, 인류의 행복과 평화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방법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는 선 채로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편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거수경례를 한다
('대한민국국기법' 제6조)

-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注目)한다.
-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벗지 아니할 수 있다.
-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舉手敬禮)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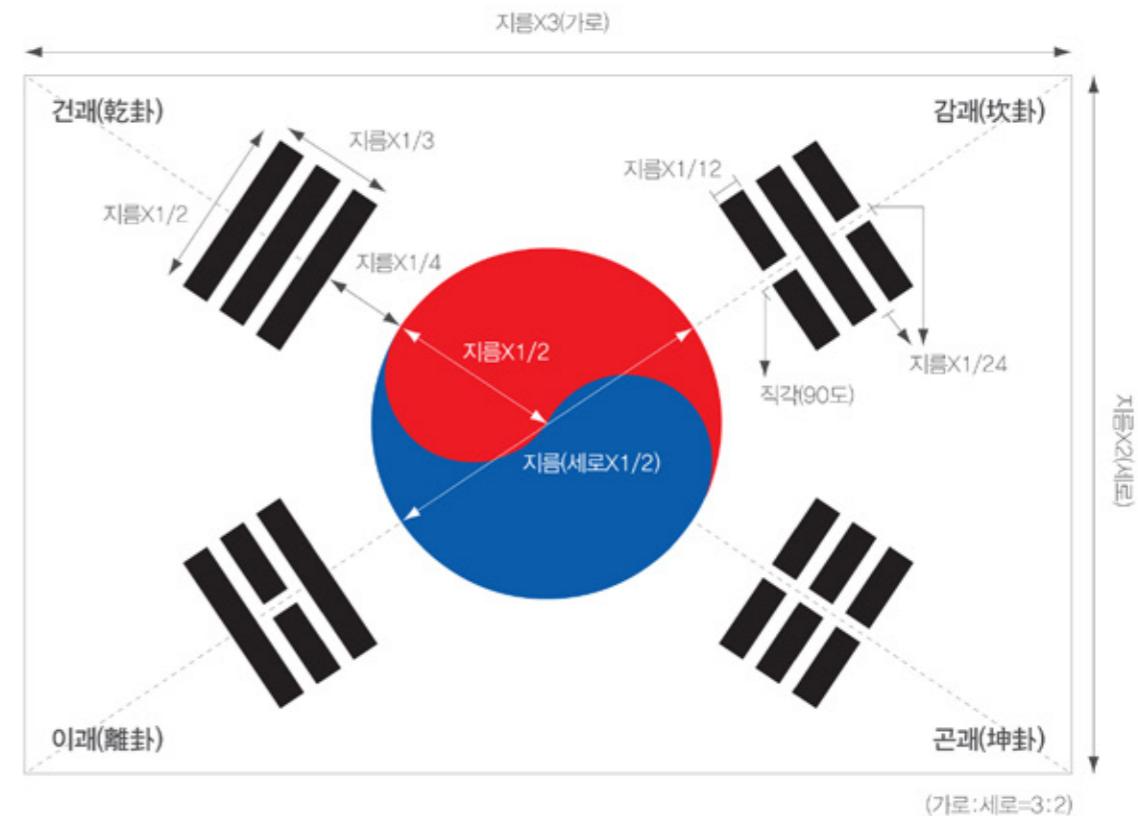
국기에 대한 맹세문

(2007.7.27. 개정)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국기의 제작

• 국기의 깃면을 그리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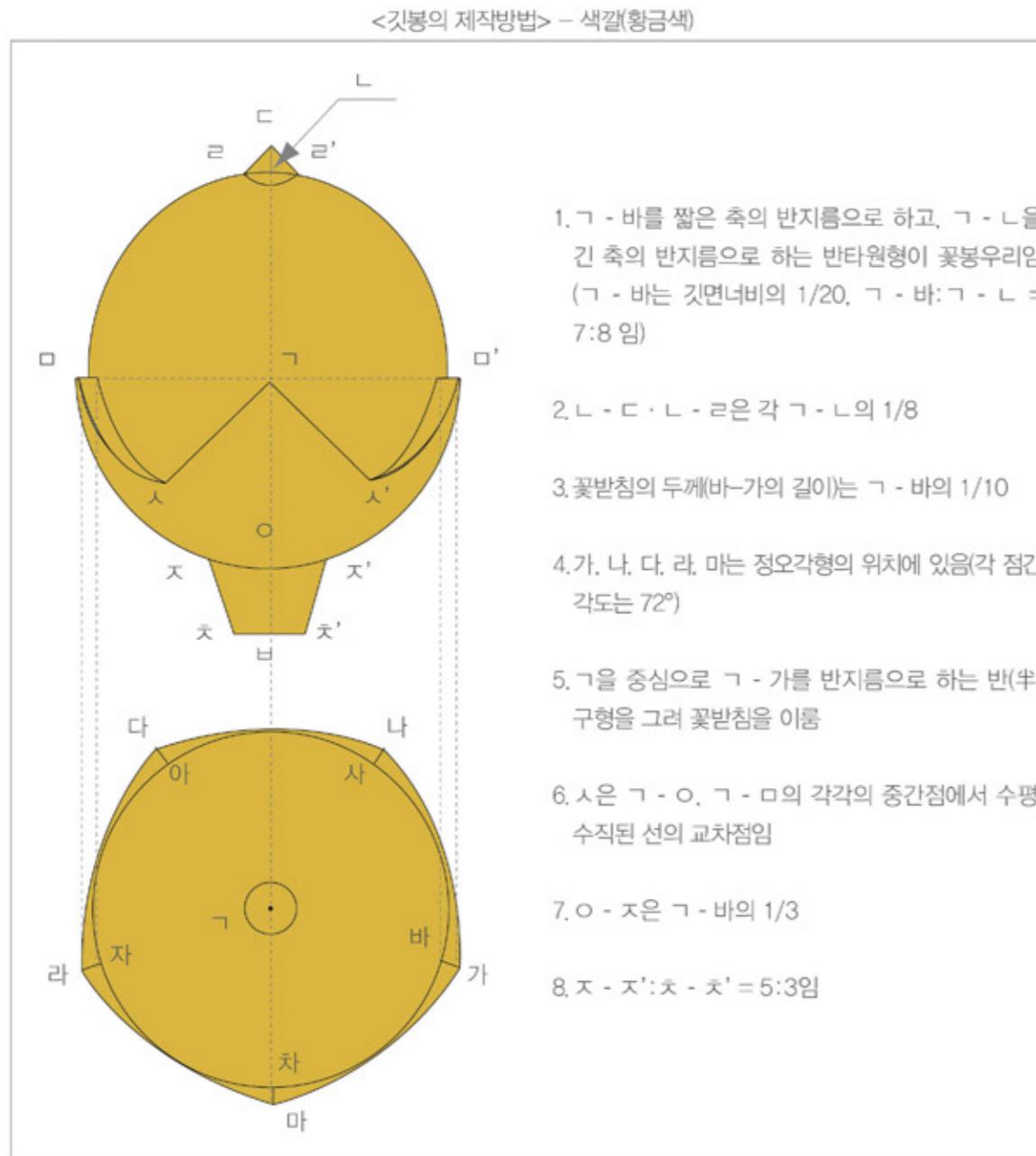
• 태극기의 표준색도(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별표2)

색 이름 색 표시 방법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흰색
CIE 색좌표	$x = 0.5640$ $y = 0.3194$ $Y = 15.3$	$x = 0.1556$ $y = 0.1354$ $Y = 6.5$	-	-
Munsell 색표기	6.0R 4.5/14	5.0PB 3.0/12	N 0.5	N 9.5

- 인쇄물 등에 국기의 깃면을 별표2의 색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깃면 바탕과 태극의 윗부분은 인쇄물 등의 바탕색으로, 태극의 아래 부분과 4괘는 검은색으로 표시한다.
- 외국인의 열람을 위한 인쇄물 등에 국기를 표시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2의 색으로 표시한다.

• 깃대, 깃봉의 제작

- 국기의 깃대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고, 그 색은 흰색·은백색·연두색 또는 이와 유사한 색으로 한다.
- 국기의 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 봉오리 모양으로 하며,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
- 깃봉의 지름은 국기 깃면 너비의 10분의 1로 한다.



국기의 개양

• 국기를 개양하는 날

국경일 및 기념일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 3월 1일(3·1절) • 8월 15일(광복절) • 10월 3일(개천절)	• 7월 17일(제헌절) • 10월 1일(국군의 날) • 10월 9일(한글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한함)
조의(弔意)를 표하는 날 : 조기(弔旗) 개양	• 국가장 기간

• 6월 6일(현충일)

• 국기를 연중 개양하여야 하는 곳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 각급 학교, 군부대 (낮에만 개양)

• 가능한 한 국기를 연중 개양하여야 하는 곳

- 공항, 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 장소
- 대형건물, 공원,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 국기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일 · 24시간 개양 할 수 있음

• 국기를 개양하는 시간

- 국기는 매일 · 24시간 개양할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 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개양한다. (국기 개양 및 강하를 매일 실시)
- 국기가 심한 눈 · 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개양하지 아니한다.
※ 국기를 매일 개양 · 강하하는 경우 국기 개양 및 강하 시각

• 3월 ~ 10월 : 07:00~18:00

• 11월 ~ 다음해 2월 : 07:00~17:00

• 국기를 개양하는 방법

- 경축일 및 평일
- 조의(弔意)를 표하는 날
현충일 · 국장기간
국민장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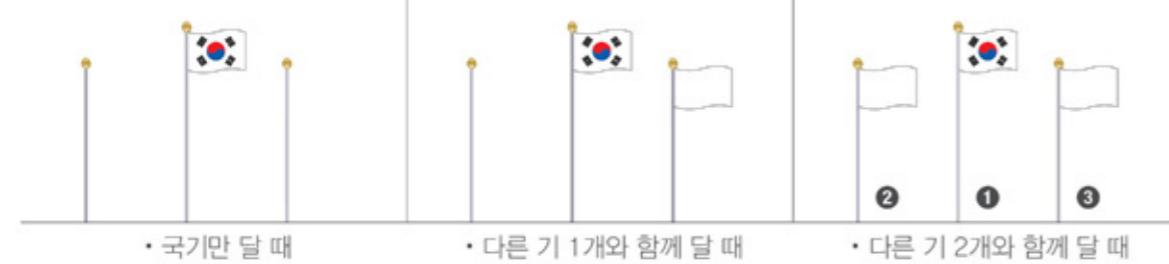
※ 태극기를 조기로 개양할 경우에는 다른 기도 조기로 개양하여야 함



•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방법

국기게양대를 높게 설치한 경우(2008.7.17 이후 새로 또는 다시 설치한 게양대)

게양대가 3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2개 이상)와 같이 설치하는 때에는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하여야 함(「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 동 규정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개정(2008.7.17.) 이후 국기게양대를 새로 설치하거나 다시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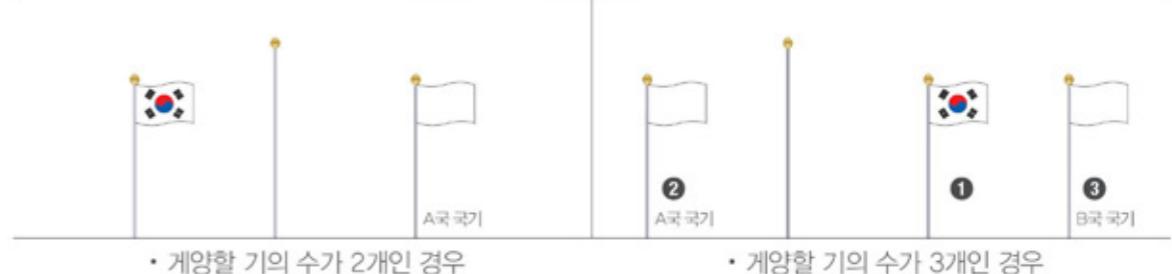
게양대가 4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게양대가 5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유엔기 및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게양대 높이가 동일한 경우(2008.7.17 이전에 설치한 게양대)

게양대가 2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 국기만 달 때



• 다른 기와 함께 달 때

게양대가 3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 국기만 달 때

• 다른 기 1개와 함께 달 때

• 다른 기 2개와 함께 달 때

게양대가 4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 국기만 달 때

• 다른 기 1개와 함께 달 때



• 다른 기 2개와 함께 달 때

• 다른 기 3개와 함께 달 때

게양대가 5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 국기만 달 때

• 다른 기 1개와 함께 달 때

• 다른 기 2개와 함께 달 때



• 다른 기 3개와 함께 달 때

• 다른 기 4개와 함께 달 때

여러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 게양할 기의 총수가 홀수인 경우(중앙)

• 게양할 기의 총수가 짝수인 경우(왼쪽)

유엔기,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 게양할 기의 총수가 홀수인 경우

• 게양할 기의 총수가 짝수인 경우

•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경우, 다른 기는 국기 게양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게양 하며, 강하할 경우에는 다른 기는 국기 강하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강하한다.

• 국기의 게양 위치

▶ 단독주택



대문의 중앙 또는 왼쪽에 게양

▶ 공동주택



앞쪽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게양

▶ 차량의 경우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게양

※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실내게시용(정부권장형) 국기를

실내게시용 국기는 2002년 정부가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나라의 상징인 태극기에 대하여 친근감을 가지고 태극기 사랑의 생활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고유의 전통미와 현대적 감각을 조화시켜 새롭게 만든 것이다.

국기들의 규격 및 종류

▶ 국기의 규격

- 국기의 크기 : 국기의 표준규격 제9호(450mm×300mm)
- 국기의 표면 : 실내조명에 반사되지 않도록 무광(無光) 처리

▶ 국기들의 규격 : 1종(2개 색상)

형태	크기	재질	색상
좌우보필형	밑판 574×350mm 원형목 32mm(지름) 두께(국기부분) 18mm	목재	밤색, 연한밤색

<국기들 사진>



▶ 국기들의 색도

- 밤 색 : pantone 18-1239TP, • 연한밤색 : pantone 16-1327TP

▶ 국기 및 국기들 규격의 변경

게시장소의 여건에 따라 국기 및 국기들의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기는 3 : 2의 비율을 유지해야 하며, 국기들의 품격을 떨어뜨려서는 안된다.

▶ 게시 위치

주 출입문 맞은편 벽면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의 구조 및 기타 게시물과의 간격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국기의 관리 및 선양

• 국기의 보관 · 관리

- 국기에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세탁하거나 다림질하여 계양 · 보관할 수 있다.
- 국기(개양용, 차량용, 수기용 등 모든 종류)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함부로 버리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지체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실 주민센터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 · 운영하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오염 · 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한다.
- 국기를 게양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게양된 국기의 깃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오염 · 훼손된 국기는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국기게양대(깃봉 포함) 상태를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 변색 또는 파손된 국기 게양대는 규정에 맞게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 특히, 깃봉의 색상이 황금색이 아니거나 변색된 경우 황금색으로 교체 또는 보수하여야 함



- 규격 : 가로 60cm × 세로 50cm × 높이 95cm
- 재질 : 합판

• 국기 또는 국기 문양의 활용 및 제한

- 국기 또는 국기 문양(태극과 4괘)은 각종 물품과 의식(儀式)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예) 학용품, 사무용품, 스포츠용품 등 각종 물품
- 다만, 국기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거나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업 · 단체 또는 개인이 영리목적, 인지도 향상 등의 사적인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기 문양을 이용하지 않도록 계도 · 안내하도록 한다.

• 국기의 구입

- 태극기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시 · 군 · 구청 및 읍 · 면 · 동 주민센터 등) 민원실이나 구내매점, 인터넷 우체국 (www.epost.kr) 또는 가까운 우체국의 "우체국쇼핑(상품카탈로그)"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기관의 민원실에 국기판매대를 설치 · 운영하거나 구내매점에서 국기를 판매하도록 하고, 상업시설에서도 국기를 판매할 것을 적극 권장하도록 한다.

<국기판매대(안내표지) 설치 우수사례>



• 지방자치단체 태극기 선양 우수사례

- 국기 게양 조례 제정, 태극기 거리, 무궁화 동산 조성(서울 영등포구)
- 태극기 365달기 시범지역 운영(48개소) 및 태극천사 동아리 활동 등(부산)
- 울산시 시내버스 태극기 부착(8개 업체, 700여대), 태극기 거리 조성 등
- 경기도 태극기 상시거리 조성(4개구, 705개소), 무궁화 공원 조성 등
- 강원 원주 태극축제 개최, 흥천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개최
- 손도장 태극기 만들기 행사, 나라사랑 광장 조성(대전 동구)
- 바람개비 태극기 동산 조성, 낙동강 둔치 무궁화 동산 · 홍보부스 설치(경북)
- 태극기 정원, 무궁화 동산 · 거리 조성, 신규임용자 태극기 배지 교부(경남)



▲ 부산 연제구 태극천사 동아리 활동



▲ 경남 창녕군 남지읍 태극기 · 한반도 정원 조성



▲ 대전 동구 구민이 만드는 손도장 태극기 행사



▲ 대전 동구 나라사랑 광장



▲ 경기 수원시 태극기 상시거리 운영



▲ 부산 태극기 365달기 시범지역 선정 · 운영
2014.10.02 01:40



▲ 충남 계룡시 태극기 거리 조성



▲ 울산 배너형 가로기 상시거리 조성



▲ 울산 시내버스 태극기 부착



▲ 부산 연제구 구청사 태극기 홀 조성

• 국기 문양 활용 디자인 (제6회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대회개요>

형태

- 행 사 명 : 제6회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
- 공모주제 : 주요 국가상징(태극기, 무궁화, 애국가, 국새, 나라문장)을 활용한 작품
- 공모기간 : 2016. 8. 1. ~ 10. 16.
- 전시기간 및 장소 : 2016. 12. 7. ~ 12. 10./ 용산 전쟁기념관 기획전시실 II
- 전시작품 : 수상작 36점 및 초대작가전



▲ 행정안전부장관상 '태극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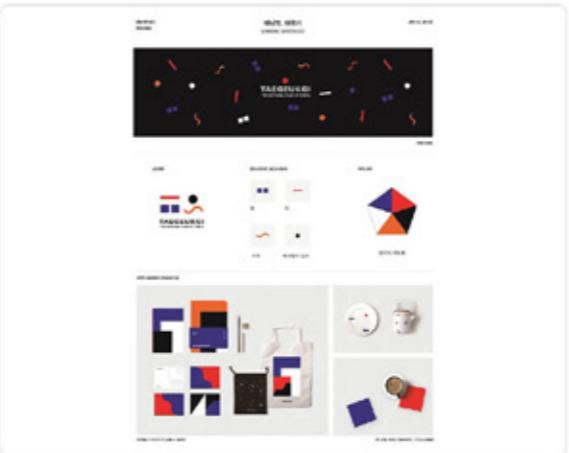
▲ 행정자치부장관상 '태극기를 활용한 도시락통'



▲ 대통령상 '해율화'



▲ 국무총리상 '한글팝업북'



▲ 산업통상부장관상 '미니멀 태극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여권커버 네임택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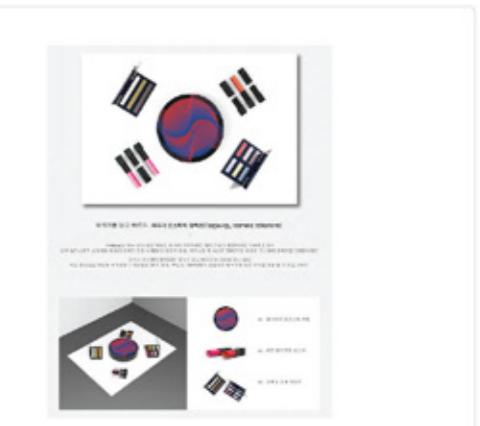
▲ 국무총리상 '태극을 그리다'



▲ 국무총리상 '라온소리 이어폰'



▲ 중소기업중앙회장상(고등부) '태극기 캐릭터 태랑이'



▲ 중소기업중앙회장상(대학부) '태극기 코스메틱 컬렉션'

국민의례

• 국민의례의 실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식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다른 식순에 앞서 국민의례를 먼저 실시하여야 한다.
- 다만, 국가간의 행사 또는 국제적인 행사,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그에 준하는 국빈(國賓)을 환영 또는 환송하기 위한 행사. 그 밖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의례를 생략한다. (생략할 수 있다.)

• 국민의례의 절차 및 시행방법

- 국민의례의 절차는 정식절차와 약식절차로 구분하며, 정식절차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의 유형 또는 행사장의 여건 등에 따라 약식절차로 시행할 수 있다.

<행사유형별 국민의례 절차의 적용 및 시행방법 예시>

• 정식절차로 시행해야 하는 경우

-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기념식 등 정부 주요행사나 각급 중앙행정기관의 공식행사

구분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묵념	행사유형(예시)
정식 절차1	국기에 대한 경례	1~4절	묵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기념식 • 정부시무식
정식 절차2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와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1절	묵념곡 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취임식, 국무총리 이·취임식 • 시무식, 종무식, 기념식, 워크숍 • 기관장 이·취임식 • 1주 이상 교육 과정의 입교식·수료식

• 약식절차로 시행할 수 있는 경우

- 행사의 유형(성격, 규모, 빈도 등)이나 행사장의 여건 등으로 볼 때 정식절차로 시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부적합한 경우

구분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묵념	행사유형(예시)
약식 절차1	전주 없는 애국가 1절 연주 *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은 하지 않음		묵념곡 연주 또는 구령으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月) 단위 이하로 실시되는 정례회의 • 체육행사, 부서 단위 이하의 소규모 워크숍 • 1주 미만 교육 과정의 입교식·수료식 • 기공식, 준공식
약식 절차2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와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없음	성격에 따라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향 재생설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 그 밖의 소규모 행사
약식 절차3	구령으로만 실시 *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은 하지 않음			

대한민국국기법

[시행 2014.1.28.] [법률 제12342호, 2014.1.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개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1.2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는 태극기(太極旗)로 한다.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①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개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는 선 채로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편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거수경례를 한다. 그 밖에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기의 깃면, 깃봉, 깃대 등) ① 국기는 가운데의 태극(太極)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 : ☰, 坤 : ☷, 坎 : ☵, 離 : ☲) 4괘(卦)로 구성한다.

② 국기의 깃면은 그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태극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각각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하며, 꽈는 검은색으로 한다.

③ 국기의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대 2의 비례로 한다. 다만, 경축행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기의 깃봉은 아랫부분에 꽂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봉오리 모양으로 하며,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

⑤ 국기의 깃대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고, 그 색은 흰색·은백색·연두색 또는 이와 유사한 색으로 한다.

⑥ 국기 깃면의 그리는 방법과 규격, 국기의 표준색도, 깃봉의 제작 및 깃대의 설치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5.30.>

1.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 공항·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4.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④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계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⑤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

⑥ 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시각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기의 게양 방법 등) ① 국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게양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1. 경축일 또는 평일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아니하고 게양함
2. 현충일·국가장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弔旗)를 게양함

② 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의 게양위치, 게양식·강하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기의 관리 등) ①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 등 각종 행사에서 수기(手旗)를 사용하는 경우 행사를 주최하는 자는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자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④ 국기를 영구(靈柩)에 덮을 때에는 국기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영구와 함께 매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국기를 영구에 덮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기 또는 국기 문양의 활용 및 제한) ① 국기 또는 국기 문양(태극과 4괘)은 각종 물품과 의식(儀式)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국기 문양 중 태극과 꽈는 이를 함께 또는 따로 분리하여 각종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2조(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 국가는 국가선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부칙 <제8272호, 2007.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제10741호, 2011.5.30.> (국가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대한민국국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조제1항제2호 중 “국장기간·국민장일”을 “국가장기간”으로 한다.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342호, 2014.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선양활동)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국가선양사업을 추진·지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교육부장관은 각급 학교에서의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 등 국가선양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조(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국기에 대한 경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注目)한다.
2.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3.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가수경례(舉手敬禮)를 한다.

제4조(국기에 대한 맹세) 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는 다음의 맹세문을 낭송하되, 애국기를 연주하는 경우에는 낭송하지 아니한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② 제1항의 맹세문 낭송은 녹음을·영상물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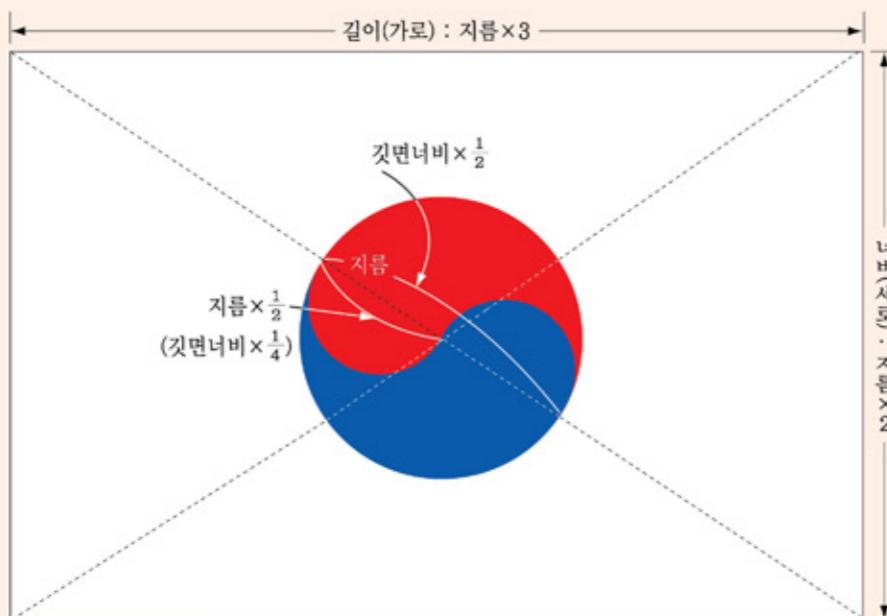
제5조(깃면의 길이와 너비에 대한 예외)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경축행사 또는 가로변에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에는 깃면의 길이와 너비의 비례를 달리 할 수 있다.

제6조(국기의 깃면을 그리는 방법)

① 국기는 흰색 바탕의 깃면에 가운데의 태극과 네 모서리의 4괘로 구성한다.

② 태극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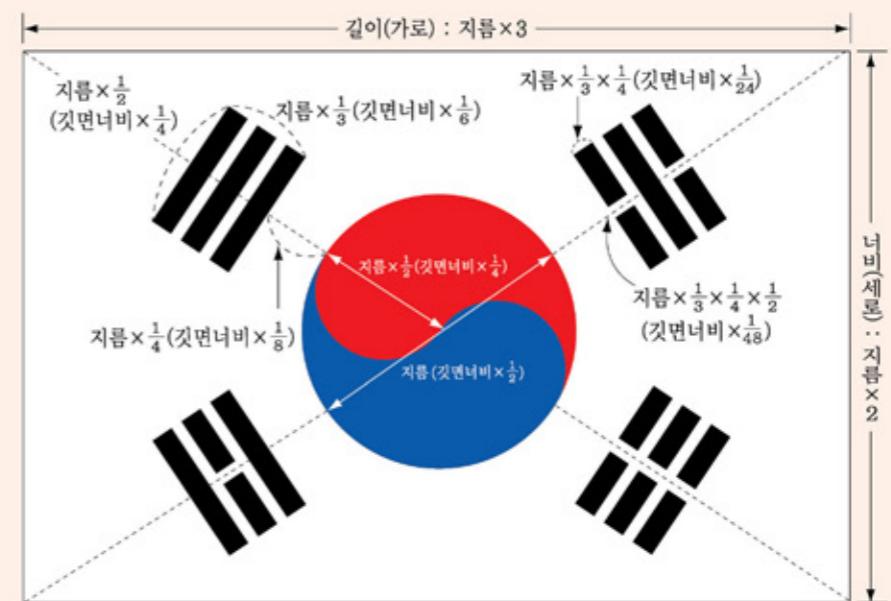
1. 깃면의 두 대각선이 서로 교차하는 점을 중심으로 깃면 너비의 2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다.
2. 두 대각선 중 왼쪽 윗 모서리에서 오른쪽 아래 모서리로 그어진 대각선상의 원의 지름을 2등분하여, 왼쪽 부분에 원의 지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대각선의 아래 부분에 그리고, 그 오른쪽 부분에 원의 지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대각선의 윗부분에 그린다.
3. 반원으로 연결된 원의 윗부분은 빨간색으로, 그 아래부분은 파란색으로 한다.



③ 4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린다.

1. 4괘는 깃면의 왼쪽 윗부분에 건(乾 : [문자 생략])을, 오른쪽 아래부분에 곤(坤 : [문자 생략])을, 오른쪽 윗부분에 감(坎 : [문자 생략])을, 왼쪽 아래부분에 이(離 : [문자 생략])를 각각 배열한다.

2. 괘의 길이는 태극지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분의 1)로 하고, 괘의 너비는 태극지름의 3분의 1(깃면 너비의 6분의 1)로 하며, 괘와 태극사이의 거리는 태극지름의 4분의 1(깃면 너비의 8분의 1)로 한다.
3. 괘의 길이 중심을 깃면의 두 대각선상에 두되, 그 길이는 두 대각선과 각각 직각을 이루도록 한다.
4. 괘의 구성부분은 효(爻)로 하되, 그 효의 너비는 괘 너비의 4분의 1(깃면 너비의 24분의 1)로 하고, 효와 효 사이 및 끊어진 효의 사이는 효 너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8분의 1)로 한다.
5. 괘는 검은색으로 한다.



제7조(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 법 제7조의 국기 깃면의 크기는 특호 및 1호부터 10호까지로 구분하며, 호수별 표준규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길이와 너비의 비례를 유지하면서 그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8조(국기의 표준색도)

법 제7조의 국기의 표준색도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금실의 부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기의 깃면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1.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의 승용차에 달는 경우
2. 의전용으로 쓰이는 경우

3.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
4. 각종 국제회의 시 탁상용으로 쓰이는 경우

② 금실의 길이는 깃면 너비의 7분의 1에서 8분의 1 사이의 길이로 하여 깃면의 둘레에 달되.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금실을 달지 아니한다.

제10조(깃봉의 제작) 법 제7조의 깃봉의 지름은 국기 깃면 너비의 10분의 1로 하며, 깃봉의 제작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깃대의 설치방법) ① 지상이나 건물 등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깃대(이하 "국기게양대"라 한다)는 지면 또는 건물 등에 수직으로 설치한다. 다만, 건물 등의 벽면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늘을 향하여 기울어진 형태로 설치한다.

② 국기게양대는 주위가 트인 지면 또는 건물 옥상 등에 국기의 게양식·강하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높게 설치한다. 다만, 건물의 구조 또는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물앞면의 벽면 또는 차양시설 위 등 건물 형태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③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와 같이 설치하는 때에는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7.17.>

1. 국기게양대를 포함하여 게양대를 2개 설치하는 경우
2. 국기게양대와 유엔기·외국기를 상시 게양하기 위한 게양대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게양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총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국기게양대를 중앙에 설치하고, 짝수인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중앙에서 왼쪽 첫 번째에 설치한다. <신설 2008.7.17.>

⑤ 제3항에 따라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때에는 국기게양대의 높이는 다른 게양대보다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높게 하고, 그 간격은 깃면의 길이(가로)보다 넓게 한다. <신설 2008.7.17.>

제12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① 국기를 매일 게양·강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각에 국기를 게양·강하한다.

1. 게양 시각 : 오전 7시
2. 강하 시각 :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오후 5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각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8.22., 2013.3.23., 2014.11.19., 2017.7.26.>

1. 야간행사 등에 국기를 게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가장법」에 따른 국가장 등 조기(弔旗)를 게양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경우

제13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① 국기는 깃대 또는 국기게양대에 게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기를 벽면 등에 게시할 수 있다.

1. 실내 여건, 교육 목적 등으로 실내 벽면에 국기를 게시하는 경우
2. 경축 등의 목적으로 건물의 벽면 등에 대형국기를 게시하는 경우

② 국기는 그 깃면의 건과가 왼쪽 위로 오도록 하여 건과와 이과가 있는 쪽의 깃면 너비부분이 깃대에 접하도록 게양한다.

- ③ 조기의 게양 및 강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게양 시에는 깃면의 왼쪽 윗 모서리가 깃봉에 달을 때까지 깃면을 올렸다가 깃면 너비만큼 내려 게양한다.
 2. 강하 시에는 깃면의 왼쪽 윗 모서리가 깃봉에 달을 때까지 올렸다가 다시 내린다.

제14조(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게양하는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게양할 때에는 별표 4에 따라 이과가 왼쪽 위로 오도록 한다. 다만, 가로변에 게양하는 국기로서 대칭하여 2개의 국기를 늘여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왼쪽 국기의 건과가 왼쪽 위에 오도록 한다.

제15조(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①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때에는 별표 5에 따라 국기를 가장 높은 깃대에 게양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게양대 높이가 동일할 때에는, 별표 5-2에 따라 게양하는 기의 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국기를 중앙에, 그 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 첫 번째에 게양한다. <개정 2008.7.17.>

②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경우에 다른 기는 국기게양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게양하며, 강하할 경우에는 다른 기는 국기강하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강하한다.

제16조(국기와 외국기의 게양 방법) ① 외국기는 우리나라를 승인한 나라만 게양한다. 다만, 국제회의·체육대회 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승인하지 아니한 국가의 국기도 게양할 수 있다.

② 국기와 외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별표 6과 같이 하며, 국기와 외국기는 그 크기와 높이를 같게 게양한다. 이 경우 외국기의 게양 순서는 외국 국가 명칭의 영문 알파벳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08.7.17.>

③ 국기와 외국기를 교차시켜 게양하는 경우에는 별표 7과 같이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깃면이 왼쪽에 오도록 하고, 그 깃대는 외국기의 깃대 앞쪽에 오도록 한다.

제17조(국기와 유엔기의 게양 방법) ① 국기와 유엔기를 게양할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에 유엔기를, 오른쪽에 국기를 게양한다.

② 국기·유엔기 및 외국기를 함께 게양할 경우에는 유엔기·국기 및 제16조제2항의 외국기의 순서로 게양한다.

제18조(국기의 게양위치) ① 국기는 다음 각 호의 위치에 게양한다. 다만,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위치를 달리 할 수 있다.

1. 단독주택의 대문과 공동주택 각 세대의 난간에는 중앙이나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에 국기를 게양한다.
2. 제1호의 주택을 제외한 건물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지면의 중앙이나 왼쪽, 옥상의 중앙, 현관의 차양시설 위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 중앙에 국기를 게양한다.
3. 건물 안의 회의장·강당 등에서는 그 내부의 전면을 앞에서 바라보아 그 전면의 왼쪽 또는 중앙에 국기가 위치하도록 한다.
4. 차량에는 그 전면을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에 국기를 게양한다.

제19조(게양식 및 강하식) ① 법 제8조제4항의 낮에만 국기를 게양하는 학교 및 군부대는 그 주된 국기게양대의 국기를 게양·강하하는 때에는 게양식 및 강하식을 행한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의 사유로 국기를 게양·강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9조의 게양식 및 강하식은 애국가의 연주에 맞추어 행한다. 다만, 주변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애국가의 연주를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게양식 및 강하식에서의 국기에 대한 경의표시) 법 제9조의 국기 게양식 또는 강하식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기에 대하여 경의를 표시한다. 다만, 경기 중이거나 그 밖에 경의를 표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의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기를 볼 수 있는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경례를 하며, 국기를 볼 수 없고 연주만을 들을 수 있는 국민은 그 방향을 향하여 선채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

2. 건물의 올타리안에 있는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은 그 차량을 멈추고 앉은 채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

제21조(영구에 국기 깃면을 덮는 방법)

법 제10조에 따라 국기를 영구(靈柩)에 덮을 때에는 영구의 덮개를 위에서 바로 내려다보아 덮개의 윗부분 오른쪽에 건(乾 : [문자 생략])괘가, 왼쪽에 이(離 : [문자 생략])괘가 오도록 한다.

제22조(국기의 관리)

국기에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를 훠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기를 세탁하거나 다림질하여 게양·보관할 수 있다.

제23조(재외공관의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각 등)

재외공관의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각 등은 주재국의 관례에 따른다.

제24조(국기선양사업의 범위)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는 국기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28211호, 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1>까지 생략

<122>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23>부터 <388>까지 생략

[별표 1]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
(제7조 관련)

호수	깃면의 표준규격 (길이×너비)	비고
특호	540cm이상×360cm이상	
1호	450cm×300cm	
2호	306cm×204cm	
3호	270cm×180cm	
4호	225cm×150cm	
5호	180cm×120cm	용도별 권장규격 • 건물게양대용 : 특호, 1호부터 7호까지
6호	153cm×102cm	• 가정용 : 7호 또는 8호
7호	135cm×90cm	• 차량용 : 9호 또는 10호
8호	90cm×60cm	
9호	45cm×30cm	
10호	27cm×1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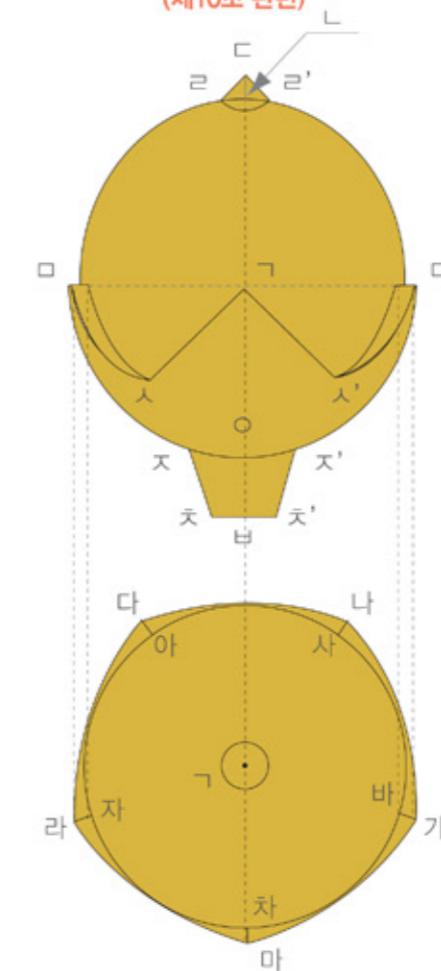
[별표 2]

국기의 표준색도
(제8조 관련)

색 표시 방법	색 이름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흰색
CIE 색좌표		$x = 0.5640$ $y = 0.3194$ $Y = 15.3$	$x = 0.1556$ $y = 0.1354$ $Y = 6.5$	-	-
Munsell 색표기		6.0R 4.5/14	5.0PB 3.0/12	N 0.5	N 9.5

비고 : 1. 인쇄물 등에 국기의 깃면을 별표 2의 색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깃면 바탕과 태극의 윗부분은 인쇄물 등의 바탕색으로, 태극의 아랫 부분과 4괘는 검은색으로 표시한다.
 2. 외국인의 열람을 위한 인쇄물 등에 국기를 표시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2의 색으로 표시한다.

[별표 3]

깃봉의 제작방법
(제10조 관련)

1. 그 - 바를 짧은 축의 반지름으로 하고, 그 - 나를 긴 축의 반지름으로 하는 반타원형이 꽃봉우리임
(그 - 바는 깃면너비의 1/20, 그 - 바: 그 - 나 = 7:8 임)
2. 나 - 그 - 그 - 그 - 바는 각 그 - 나의 1/8
3. 꽃받침의 두께(바-가의 길이)는 그 - 바의 1/10
4. 가, 나, 다, 라, 마는 정오각형의 위치에 있음(각 점간 각도는 72°)
5. 그을 중심으로 그 - 가를 반지름으로 하는 반(半)구형을 그려 꽃받침을 이룸
6. 나은 그 - 오, 그 - 모의 각각의 중간점에서 수평, 수직된 선의 교차점임
7. 오 - 즈은 그 - 바의 1/3
8. 즈 - 즈': 즈 - 즈' = 5:3임

[별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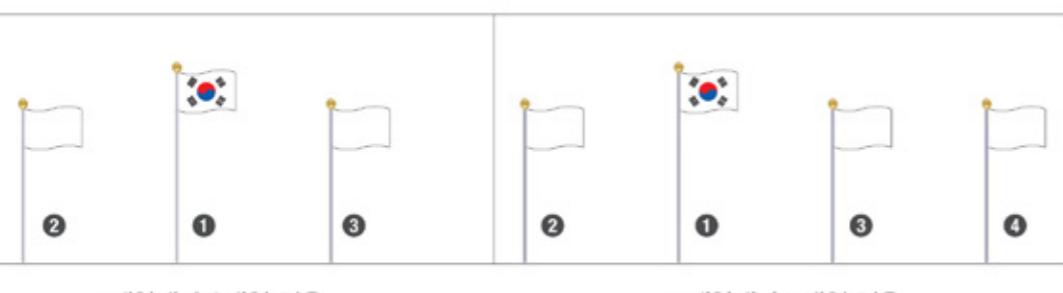
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게양하는 방법
(제14조 관련)



[별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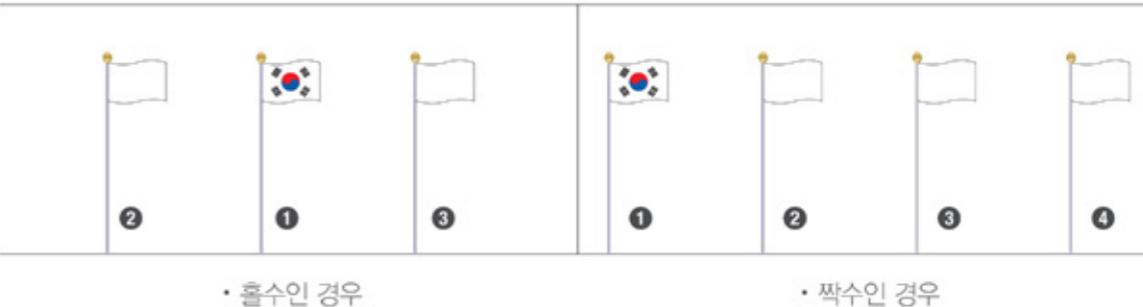
<신설 2008.7.17>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방법 (국기게양대를 높게 설치한 때)
(제15조 제1항 본문 관련)



[별표 5의2]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방법
(게양대의 높이가 동일한 경우)
(제15조 제1항 단서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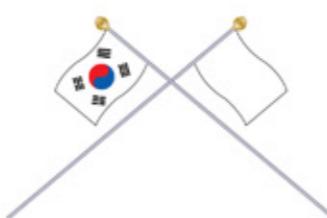
[별표 6]

국기와 외국기의 게양 방법
(제16조 제2항 관련)



[별표 7]

국기와 외국기를 교차시켜 게양하는 방법
(제16조 제3항 관련)



국기의 게양 ·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0.25.] [국무총리훈령 제696호, 2017.10.25.,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대한민국국기법」 및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기의 게양 · 관리 및 선양에 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존경심과 애국심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른 기”란 국기를 제외한 외국기, 단체기, 군집기(群集旗)를 말한다.
2.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3. “차량기”란 차량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4. “깃대형”이란 실내에서 이동식 깃대에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말한다.
5. “게시형”이란 실내에서 벽면에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말한다.
6. “탁상형”이란 실내에서 탁상 위에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국기의 게양

제3조(국기게양대 설치 기준) ①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청사, 공항, 호텔, 대형건물, 경기장 및 공동주택단지 등에서 국기를 게양하기 위하여 고정하여 설치하는 깃대(이하 “국기게양대”라 한다)를 설치할 경우 국기게양대의 설치 장소별 권장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상 : 지면에서 7 미터 이상. 다만, 3층 이하의 건물인 경우 5 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옥상 및 차양대(遮陽臺) 위 : 옥상 · 차양대 바닥에서 3 미터 이상
3. 건물벽면 : 조기(弔旗) 게양이 가능하도록 게양할 국기 세로 너비의 3배 이상

② 건물 및 건물 주변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국기게양대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최소한 게양하는 국기의 가로 길이보다 넓게 하여 국기가 건물에 달지 않게 해야 한다.

③ 국기게양대를 포함한 여러 개의 게양대를 함께 설치할 경우에는 게양대 간 간격은 최소한 게양하는 국기의 가로 길이보다 넓게 하여 서로 달지 않게 해야 한다.

제4조(국기 게양일 및 게양 · 강하 시각) ① 국기는 매일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해 국기게양식 및 국기강하식이 필요한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국기게양대에는 매일 낮에만 게양하며, 심한 눈 · 비와 바람 등으로 국기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에는 모든 국민이 국기를 게양하도록 계도 하는 데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옥외 국기 게양 규격) ① 옥외 국기 게양 규격은 영 별표 1에 따른 규격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고층 · 대형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높이와 규모를 고려하여 최대한 대형의 국기를 게양하도록 한다.

1. 국가기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청사 : 3호기(270센티미터×180센티미터) 이상
2. 시 · 군 · 자치구,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밖에 관할구역이 이에 상당하는 기관의 청사 : 5호기 (180센티미터×120센티미터) 이상
3. 읍 · 면 · 동 및 그 밖에 관할구역이 이에 상당하는 기관의 청사 : 7호기 (135센티미터×90센티미터) 이상

제6조(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방법) ① 외국기, 단체기 또는 군집기(이하 “다른 기”라 한다)를 국기와 함께 게양하는 경우에는 그 크기를 국기에 맞추어 게양하며, 다른 기의 모양이 국기와 달라 크기를 맞출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기의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까지의 길이를 국기의 대각선의 길이에 맞춰 그 크기를 조정한다.

②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한 경우에는 국기를 높은 게양대에 게양한다. 다만,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그 높이를 같게 게양한다.

③ 국기와 함께 게양할 다른 기의 게양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양할 기의 종수가 홀수인 경우 : 앞에서 게양대를 바라보아 국기의 왼쪽이 차순위, 국기의 오른쪽이 차차순위로 하여 국기의 왼쪽이 오른쪽에 우선하여 번갈아 가면서 국기에서 멀어질수록 후순위가 되도록 한다.

2. 게양할 기의 종수가 짹수인 경우 : 앞에서 게양대를 바라보아 국기의 바로 오른쪽이 차순위. 그 다음이 차차순위로 하여 국기에서 오른쪽으로 멀어질수록 후순위가 되도록 한다. 다만, 국기 게양대가 높게 설치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따르되, 마지막 순서의 기는 오른쪽 끝에 위치하도록 하여 좌우 균형을 맞추도록 한다.

④ 게양대의 높이가 동일한 경우의 국기 게양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양할 기의 수가 홀수인 경우 : 중앙
2. 게양할 기의 수가 짹수인 경우 : 앞에서 게양대를 바라보아 왼쪽 첫 번째

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의 경우에 국기 및 다른 기의 게양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국기의 조기 게양) ①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현충일 등의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도 국기와 같이 조기로 게양한다. 다만, 외국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② 조기는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게양하되,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단다.

③ 가로기와 차량기는 원칙적으로 국경일 등에 게양하고 조기 게양일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다만, 국립현충원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8조(국기의 야간 게양) ① 국기를 매일 24시간 게양하는 경우 야간게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 기관 청사의 주된 게양대에는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청사 울타리 등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에도 가급적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내 공항·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와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의 국기게양대에도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하여금 가급적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도록 한다.

③ 야간조명은 방수등(防水燈)으로 하며 국기의 색상이 정확하게 보이는 메탈할라이드 계통을 사용하되, 전력량당 광량(光量)이 많은 것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수명이 길며 빛의 색상이 변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④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국기 전체를 비출 수 있도록 하며, 다른 기와 함께 게양할 때는 다른 기도 함께 조명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가로기 게양) ① 가로기는 다음 각 호의 날을 경축하기 위해 주요 도로변에 게양하며, 제1호의 경우에는 전일부터 당일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해당기간에 게양한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경일
2. 국군의 날
3. 그 밖에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또는 기간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기념일이나 축제를 경축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한정하여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으며, 국기 선양을 목적으로 일정구간을 지정하여 연중 게양할 수 있다.

③ 가로기용 국기꽂이는 V자형 꽂이(표준규격의 국기를 게양하기 위해 V자형으로 설치한 국기꽂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너형 꽂이(국기의 깃면을 필요한 만큼 늘여서 수직으로 게양하기 위해 설치한 국기꽂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설치하며,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V자형 꽂이를 설치할 때는 V자형 꽂이의 방향을 도로와 인도의 경계선과 나란히 하여 기둥의 도로 방향 쪽 면에 하나의 몸체로 설치하고 V자의 내각은 90도 이내로 하여 부채꼴모양이 되도록 한다.

⑤ 하나의 기둥에 V자형 꽂이와 배너형 꽂이를 함께 설치할 때에는 V자형 꽂이를 배너형 꽂이보다 높게 설치하고, 이 경우 국기를 다른 기보다 아래쪽에 게양해서는 아니된다.

⑥ 국가적 경축일에는 국기만을 가로기로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국기와 다른 기를 함께 게양할 수 있다.

1. 외국의 주요 국빈 방문이나 국제적 행사기간과 겹칠 때
2. 지역축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경축일과 겹칠 때
3. 기타 민방위훈련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행사와 겹칠 때

⑦ 국기와 다른 기를 함께 게양할 경우에는 차량진행방향에서 바라보아 국기는 왼쪽, 다른 기는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하여 하나의 기둥에 같이 게양하거나 기둥을 달리하여 국기와 다른 기를 차례로 번갈아 게양한다.

⑧ 가로기의 게양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주택 및 건물에서의 국기 게양) ① 단독주택의 대문과 공동주택의 각 세대 난간에는 밖에서 바라보아 중앙이나 왼쪽에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위치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건물 또는 건물 주변에 국기를 게양할 경우에는 건물 앞쪽에서 건물을 바라보아 건물의 중앙이나 왼쪽 지상, 건물 옥상의 중앙이나 왼쪽 또는 차양시설 위의 중앙에 수직으로 게양하거나 주된 출입구의 위쪽 벽면 중앙에 하늘을 향해 경사지게 게양할 수 있다.
 ③ 주택 및 건물에서의 국기 게양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실내에서의 국기 게양) ① 실내에서의 국기 게양은 깃대형을 원칙으로 하되, 실내여건에 따라 게시형이나 탁상형으로도 할 수 있다.

② 실내에서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격으로 게양하되, 사무실의 크기 등을 감안하여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깃대형 : 5호부터 8호까지의 규격
2. 게시형 : 8호부터 9호까지의 규격. 이 경우 가급적 별표 4에 따른 실내게시용 국기를 규격을 사용하도록 한다.
3. 탁상형 : 9호부터 10호까지의 규격

③ 실내에서의 국기 게양 장소는 별표 5에 따르되, 시·군·자치구 이상의 기관의 기관장실에는 가급적 깃대형을 설치하도록 한다.

④ 깃대형에 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태극문양의 빨간색이 오른쪽에 오도록 하여 늘어뜨려 단다.

⑤ 국기의 게양 유형별 게양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깃대형의 경우
 - 가. 기관장실, 부서장실 등의 개인집무공간인 경우에는 앞에서 집무탁상을 바라보아 집무탁상 뒤 왼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 나. 회의실 또는 강당의 경우에는 앞에서 단상을 바라보아 단상 왼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2. 게시형의 경우
 - 가. 주출입문 맞은편 벽면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의 구조 및 기타 게시물과의 간격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나. 국기를 다른 게시물과 함께 게시하는 경우에는 다른 게시물보다 낮게 게시해서는 안되며 별표 6과 같이 게시한다.
3. 탁상형의 경우 : 앞에서 탁상을 바라보아 탁상 위 왼쪽 전면에 위치하도록 한다.

제12조(행사장에서의 국기 게양) ① 행사장별 국기 게양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의 경우 : 이미 설치된 옥외의 주된 게양대에 대형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상에 참석한 사람들이 옥외 게양대의 국기를 볼 수 없거나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앞에서 단상을 바라보아 단상 왼쪽에 임시 국기게양대를 설치한다.

2. 옥내행사의 경우 : 실내체육관 등 중·대형 행사장은 대형 깃면을 단상 뒤편 중앙 벽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형 실내체육관 등은 깃면이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3. 회의실 등 소규모 행사장의 경우 : 탁상형 국기를 게양하되, 앞에서 단상을 바라보아 단상 왼쪽에 게양하도록 한다.

② 실내·외 행사를 막론하고 행사장에 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실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적으로 발광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활용하여 국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되 실물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채 발광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통해 영상만으로 국기를 보여주어서는 아니된다.

제3장 국기의 관리 및 선양

제13조(옥외게양용 국기천의 소재) 옥외게양용 국기천의 소재는 쉽게 오염되지 않고 약한 바람에도 잘 나부끼며 심한 비·바람 등의 날씨에도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천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와 같은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코팅 등 특수처리를 하거나 다른 소재의 천을 사용할 수 있다.

1. 소재 : 폴리에스테르 섬유 100퍼센트
2. 무게 : 1제곱미터당 53그램 이상
3. 밀도 : 5센티미터당 경사 165본 이상, 위사 131본 이상

제14조(국기의 염색 및 가공) ① 국기는 그 색상이 변색 또는 퇴색됨이 없이 선명하게 오래 지속되는 방식으로 염색하여야 한다.

② 국기의 염색은 앞뒤 양면 모두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하여야 하며 태극의 빨간색과 파란색이 서로 겹치거나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기는 그 가공과정에서 때가 덜 묻고 정전기의 발생을 방지하며 발수가 잘 되도록 필요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④ 국기는 그 깃면의 테두리를 두줄박이로 봉제하여 쉽게 터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국기의 품질가공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15조(국기 보급 확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기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5., 2014.12.3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들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국가선양관련단체, 국기판매업체 등과 협의하여 소속기관의 민원실에 국기판매대를 설치·운영하거나 구내매점에서 국기를 판매하도록 하고, 백화점·편의점·문구점 등 상업시설에서도 국기를 판매할 것을 적극 권장하도록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대회의 시상품이나 행사기념품 및 방문기념품 등으로 국기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입자 또는 혼인 신고자 등에게 국기를 선물로 증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주택이나 각종 업소에서도 입주 증정품 또는 사은품 등으로 국기를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도록 한다.

제16조(국기수거함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실, 주민센터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오염·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국기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국기 게양 관리) ① 국기를 게양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게양된 국기의 깃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오염·훼손된 국기는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국기게양대 상태를 월 1회 이상 정기점검하여 변색 또는 파손된 국기게양대는 규정에 맞게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오염·훼손된 가로기를 게양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게양기간 동안 가로기의 깃대가 파손되거나 깃면이 오염 또는 훼손된 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국기 및 국기 문양의 활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기를 선양할 목적으로 국기 및 국기 문양의 활용을 장려하되, 민간 기업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영리 목적, 인지도 향상 등의 사적인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기 문양을 이용하지 않도록 계도·안내하도록 한다.

1. 국기의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국기 또는 국기 문양이 국민에게 혐오감을 줄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경우

제19조(국기의 선양)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존엄성과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의 국기에 대한 인식 및 친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기 보급 운동, 국기사랑 글짓기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대전 등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을 개발·추진하도록 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국기 선양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국기 그리는 법과 게양 방법 및 국기에 대한 예절교육을 실시하여 국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국경일, 기념일 등 모든 국민이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시기에는 특별히 국기 게양 방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④ 국기 선양을 위한 각 기관별 추진사항은 별표 8과 같다.

부칙 <제00538호, 2009.9.1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태극기 사랑운동 실천지침은 폐지한다.

부칙 <제00601호, 2013.4.1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640호, 2014.12.3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696호, 2017.10.25>

이 훈령은 공모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경우에 따른 국기 및 다른 기의 게양 위치

(제6조제5항 관련)

1. 국기 게양 방법



• 국경일 · 평일



• 조의를 표하는 날

2. 국기게양대가 높게 설치된 경우

(2008. 7. 17.부터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게양대가 3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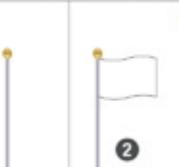


• 다른 기 1개와 함께 달 때



• 다른 기 2개와 함께 달 때

게양대가 4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 다른 기 1개와 함께 달 때

• 다른 기 2개와 함께 달 때

• 다른 기 3개와 함께 달 때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 게양할 기의 수가 2개인 경우

• 게양할 기의 수가 3개인 경우

3. 게양대의 높이가 동일하게 설치된 경우

(2008. 7. 17. 이전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한 경우에 적용한다)

게양대가 2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 국기만 달 때

• 다른 기와 함께 달 때

게양대가 홀수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 국기만 달 때

• 다른 기 1개와 함께 달 때

• 다른 기 2개와 함께 달 때

게양대가 짝수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 다른 기 1개와 함께 달 때

• 다른 기 2개와 함께 달 때

• 다른 기 3개와 함께 달 때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 게양할 기의 총수가 홀수인 경우(중앙)



• 게양할 기의 총수가 짝수인 경우(왼쪽)

[별표 2]
가로기의 게양 방법
(제9조 제8항 관련)

1. 국기만 게양할 때(차량 진행 방향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 경사진 형태(V자형)



• 깃면을 늘여 다는 형태(배너형)

2. 국기와 다른 기를 함께 게양할 때



• 경사진 형태(V자형)



• 깃면을 늘여 다는 형태(배너형)

비고 : 하나의 기둥에 꽂이를 달리하여 위 그림과 같이 게양하거나, 기둥을 달리하여 국기와 다른 기를 차례로 번갈아 게양함

[별표 3]
주택 및 건물에서의 국기 게양 방법
(제10조 제3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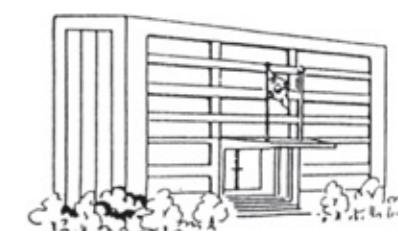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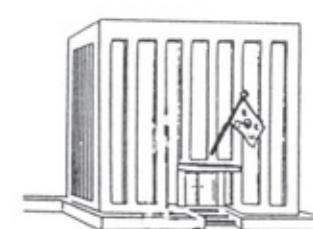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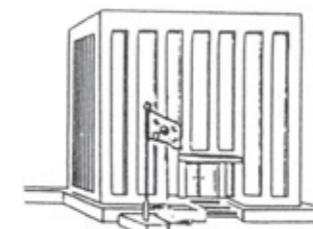
1. 단독주택 : 집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의 왼쪽 또는 중앙에 게양한다.



2. 공동주택 : 집 밖에서 바라보아 베란다의 왼쪽 또는 중앙에 게양한다.



3. 건물주변 : 전면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 중앙에 게양한다.



[별표 4]

**실내 게시용(정부권장형) 국기를 규격
(제11조 제2항 관련)**
1. 구성 : 국기, 국기를**2. 국기의 규격 등**

- 국기의 크기 : 국기의 표준규격 제9호(450mm×300mm)
- 국기의 표면 : 실내조명에 반사되지 않도록 무광(無光) 처리

3. 국기들의 규격 등 : 1종(2개 색상)

형태	크기	재질	색상
좌우보필형	밀판 574×350mm 원형목 32mm(지름) 두께(국기부분) 18mm	목재	밤색, 연한밤색

• 국기들 사진



밤색



연한밤색

4. 국기들의 색도

- 밤 색 : pantone 18-1239TP.
- 연한밤색 : pantone 16-1327TP

5. 국가 및 국기들 규격의 변경

게시장소의 여건에 따라 국기 및 국기들의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기는 3 : 2의 비율을 유지해야 하며, 국기들의 품격을 떨어뜨려서는 안된다.

[별표 5]

**실내 게양(게시) 범위
(제11조 제3항 관련)**
1.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구 분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대회의실 (대강당)	민원실	부서장실	일반사무실
유무	○	□	○	□	△	△
유형 (택1)	깃대형 게시형 탁상형	깃대형 게시형 탁상형	깃대형 게시형	게시형	게시형 탁상형	게시형

(○: 의무, □: 권장, △: 자율)

2.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구분	단체장실	부단체장실	대회의실 (대강당)	민원실	부서장실	일반사무실
유무	○	□	○	□	△	△
유형 (택1)	깃대형 게시형 탁상형	깃대형 게시형 탁상형	깃대형 게시형	게시형	게시형 탁상형	게시형

(○: 의무, □: 권장, △: 자율)

3.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구분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대회의실 (대강당)	민원실	부서장실	일반사무실	교무실	교실
유무	○	□	○	□	△	△	□	○
유형 (택1)	깃대형 게시형 탁상형	깃대형 게시형 탁상형	깃대형 게시형	게시형	게시형 탁상형	게시형	게시형	게시형

(○: 의무, □: 권장, △: 자율)

4.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위의 기준을 준용한다

[별표 6]
국기와 일반 게시물의 게시 예
(제11조 제5항 관련)

1. 횡으로 배치 시

- 2종의 경우



- 3종의 경우



- 4종의 경우

**2. 횡·종 배치 혼합형**

- 3종의 경우



- 4종의 경우

**3. 종으로 배치 시**

[별표 7]
국기의 품질가공기준
(제14조 제5항 관련)

구분	기준	비고
가. 일광견뢰도	4급 이상	1~8급
나. 세탁견뢰도		
– 변퇴	4급 이상	1~5급
– 오염	4급 이상	1~5급
다. 발수도	90이상	0, 50, 80, 90, 100

비고 : 등급은 한국산업표준(KS)에 의한 시험방법에 따른 등급을 말함

[별표 8]

<개정 2013.4.15., 2014.12.31., 2017.10.25>

국기선양을 위한 관련 부처별 추진사항

(제19조 제4항 관련)

1. 각 부처 공통사항

- 부처별 각종 행사시 실내의 경우라도 반드시 국기를 게양하여 TV중계나 보도사진 등에 국기가 잘 보이도록 한다.
- 각종 임명장 수여식, 기자회견(예 : 기자회견장의 배면 장식)이나 회의시에도 TV화면에서 국기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한다.
- 각종 대회나 각급 기관·단체, 교육원 및 학교 등의 시상품 또는 방문 기념품으로 국기 세트를 증정한다.
- 독립건물을 가진 각종 협회, 사회봉사 및 시민운동단체 등 산하 유관단체의 건물과 민간대형건물에 매일·24시간 국기 게양을 권장한다.
- 각급 기관·단체명으로 제작·배포하는 수첩·달력 등에 국기 수록 및 국기 다는 날을 표시하도록 한다.
- 각 부처 발간 정부간행물의 표지에 국기 문양 등 국가상징물을 활용한다.
- 국기게양대 간의 간격을 조정하여 대형국기를 게양하도록 권장한다.
- 모든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조달청 보급 국기를 구입·활용한다. 다만, 조달청에 해당 호수의 국기가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와 조달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간업체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2.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 부처 공통 추진사항

- 기관 홈페이지, 구내방송, 직원조회, 게시판 등을 활용하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국기 달기 운동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 산하 각급 기관·단체 및 관련 기업체 등에 전파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3. 부처별 소관사항

부처명	소관사항	비고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기 보급 및 선양 계획 수립·총괄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항에 대한 지도·지원 공공기관의 국기 게양 및 관리 실태 점검 국가상징 선양사업 추진 및 우수기관(개인) 포상 실시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기 달기 계획 수립·통보 관보에 국기 달기 홍보 정부청사(서울·과천·대전·세종) 국기 달기 안내 방송 실시 및 전광판 홍보 	각급 기관 및 단체
문화체육 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상징 선양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경일 계기 특집방송 프로그램 제작 공익방송 및 공익광고 등 활용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언론사(방송·신문)에 국기 달기 홍보 협조 요청 TV 방송 진행자 코멘트 협조 TV 자막 방송 	방송사 및 언론사
방송통신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외 전광판 및 케이블TV를 이용한 국기 달기 홍보 등 문화CI, 관광CI에 국기 등 국가상징 문양 활용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상징 문양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보급 등 각급 관광호텔의 매일·24시간 국기 게양 권장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급 학교 학생에 대한 국기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기의 뜻과 유래, 국기 게양 방법 등 교육 그림 그리기, 글짓기 등 활용 게양·강하식에 학생 참여 각급 학교 교과과정에 국기에 관한 내용 반영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시·도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님과 함께 국기 달기 참여 유도 국기 달기 '가정통신문' 발송 국기 달기에 대한 소감문 발표 유도 	각 시·도 교육청

산업통상 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화점 등 대형유통시설에 상설 국기 판매대 설치 및 통신판매 확충 • 민간기업체의 고객사은품으로 국기 증정 권장 • 생활용품 및 학용품 등에 국기 등 국가상징 문양을 활용한 디자인 개발 • 각 기업체의 고객 사은품·기념품으로 가정용 국기 증정 권장 •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기업체의 사보 및 신문광고 등에 국기 달기 홍보 문안 삽입 권장 	경제 5단체 및 전국은행 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계양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할인마트·백화점·호텔·시장 등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드나드는 장소 - 광역자치단체 청사의 올타리기, 시·군·구의 도로변 및 농촌마을 입구의 군집기 등 - 운동장·공원 등 다중집합시설의 국기게양대 • 국기의 대형화와 게양위치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건물에 걸맞은 대형 국기 게양 - 국기가 잘 보이도록 건물 형태별 게양위치 조정 - 대형국기에 걸맞은 게양대 설치 및 게양대 간 충분한 간격 확보 • 일선 행정기관의 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등 <p>※ 건물용·가정용 국기 비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화점 등 상업시설에 국기판매 권장 • 신축건물에 대한 국기꽂이 설치 계도 • 주된 국기게양대가 없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에 국기게양대 설치 계도 • 국기꽂이가 설치되지 않은 가구에 대한 국기꽂이 설치 대책 수립·시행 • 노후된 게양대 및 깃봉의 도색 등 주기적 정비 실시·계도 • 오염·훼손된 국기의 신속한 교체 실시·계도 • 현행 V자형 꽂이를 기급적 배너형 꽂이로 교체 또는 V자형 꽂이를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 • 춘인신고 또는 전입신고 시 국기세트 선물 증정 권장 •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홍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홍보 기능을 활용, 국기 게양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반)·리장 등 일선 조직을 활용 각 가정 국기달기 독려 • 아파트단지·상가 밀집지역 등에 홍보 유인물 배포, 게시판 부착, 안내 방송 실시 • 국기꽂이가 설치되지 않은 가구에 대하여 설치 권장 - 택시·버스 등 차량에 국기 달기 운동 전개 - 지역방송매체 및 지하철(버스) 내 홍보 방송 실시 - 관내 주요 도로에 기로기 게양 및 관리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되거나 훼손된 국기가 게양되거나 깃면이 거꾸로 게양되지 않도록 사전 확인 철저 • 게양된 기로기의 깃대가 부러지거나 깃면이 오염·훼손된 채 방치되지 않도록 수시 점검 및 즉각적인 조치 실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및 우체국판매 상품카탈로그를 통한 태극기 판매 홍보 	우정사업 본부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 호텔, 대형건물, 경기장 등에 게양대 설치 및 게양대 간 간격 확보 •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의 주게양대 설치 • 국제공항 등에서의 매일·24시간 국기 게양 • 터미널·역·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국기 게양 • 단독 및 공동주택 신축 또는 증·개축 시 국기꽂이 설치 확인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4항 •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전철 구내방송을 통한 국기 달기 홍보 안내 방송 실시 		지방 자치단체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구·선박 등의 매일·24시간 국기 게양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귀화 시 국기 증정 		
외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공관 「재외동포 국기 나눠주기 운동」추진 		
조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24시간 게양에 따른 태극기 재질기준 제고 • 가로기의 조달 물품화 추진 		

국민의례 규정

[시행 2017.8.10.] [대통령훈령 제368호, 2017.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의례(國民儀禮)의 시행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례의 올바른 시행을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 2017.8.10>

1.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처·청(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국민의례"란 각종 공식적인 의식이나 회의 또는 행사(이하 "공식행사"라 한다)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기에 대한 예를 표하고, 애국가를 애호(愛好)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예를 갖추는 일련의 격식을 말한다.
3. "국기에 대한 경례곡"이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 연주하는 곡으로 그 악보는 별표 1과 같다.
4. "국기에 대한 맹세문"이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 낭송하는 맹세문으로,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5. "묵념곡"이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는 때에 연주하는 곡으로 그 악보는 별표 3과 같다.

제3조(국민의례의 실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식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다른 식순에 앞서 국민의례를 먼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가간의 행사 또는 국제적인 행사
2.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그에 준하는 국宾(國賓)을 환영 또는 환송하기 위한 행사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4조(국민의례의 절차 및 시행방법) ① 국민의례의 절차는 정식절차와 약식절차로 구분하며, 정식 절차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의 유형 또는 행사장의 여건 등에 따라 약식절차로 시행할 수 있다.

② 국민의례의 정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으로 시행한다. <개정 2016.12.30>

1. 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와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2. 애국가 제창: 1절부터 4절까지 모두 제창하거나 1절만 제창
3.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묵념곡 연주에 맞춰 예를 표함

③ 국민의례의 약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으로 시행한다. <개정 2016.12.30>

1. 국기에 대한 경례: 전주 없는 애국가 1절을 연주(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음)하거나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또는 구령으로만 실시(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음)
2.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묵념곡 연주 또는 구령으로 실시(행사의 유형에 따라 생략 가능)

④ 행사 유형별 국민의례 절차의 적용 및 시행방법에 대한 예시는 별표 4와 같다.

⑤ 행사 주최자는 국민의례를 실시할 때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참석자가 개인별 여건에 맞게 예를 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신설 2017.8.10.>

제5조(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는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실시 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목개정 2017.8.10.]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16.12.30.>]

제6조(애국가 제창) 애국가는 선 자세로 힘차게 제창하되, 곡조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목개정 2017.8.10.]

제7조(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① 묵념은 바른 자세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다.
 ② 묵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필요한 경우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7.8.10.>
 [본조신설 2016.12.30.]
 [제목개정 2017.8.10.]

제8조(국민의례의 실시 권장)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비공식적인 행사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민의례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소속 산하기관·단체 등에게도 국민의례를
 실시할 것을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0.>
 ② 삭제 <2017.8.10.>
 ③ 삭제 <2017.8.10.>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3항로 이동 <2016.12.30>]

부칙 <제00368호, 2017.8.10>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기에 대한 경례곡
 (제2조 제3호 관련)

국기에 대한 경례곡



[별표 2]
국기에 대한 맹세문
(제2조 제4호 관련)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별표 3]
목념곡
(제2조 제5호 관련)

목념곡



[별표 4]
<개정 2016.12.30.>
행사유형별 국민의례 절차의 적용 및 시행방법 예시
(제4조 제4항 관련)

1. 정식절차로 시행해야 하는 경우

-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기념식 등 정부 주요행사나 각급 중앙행정기관의 공식행사

구분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묵념	행사유형(예시)
정식 절차1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와 함께	1~4절	목념곡 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기념식 • 정부시무식
정식 절차2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1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취임식, 국무총리 이·취임식 • 시무식, 종무식, 기념식, 워크숍 • 기관장 이·취임식 • 1주 이상 교육 과정의 입교식·수료식

2. 약식절차로 시행할 수 있는 경우

- 행사의 유형(성격, 규모, 빈도 등)이나 행사장의 여건 등으로 볼 때 정식절차로 시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부적합한 경우

구분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묵념	행사유형(예시)
약식 절차1	전주 없는 애국가 1절 연주 *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은 하지 않음	없음	목념곡 연주 또는 구령으로 실시 * 행사 성격에 따라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月) 단위 이하로 실시되는 정례회의 • 체육행사, 부서 단위 이하의 소규모 워크숍 • 1주 미만 교육 과정의 입교식·수료식 • 기공식, 준공식
약식 절차2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와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약식 절차3	구령으로만 실시 *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은 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향 재생설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 그 밖의 소규모 행사

3. 각 절차별 시행방법

<공통사항 : 국민의례 시작 요령(예시)>

“지금부터 ‘행사명’을(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는 행사 시작 전에 국민의례 시 장애인 등
일어서기 어려운 참석자를 배려하는 적절한 안내 실시

1) 정식절차 1

① 국기에 대한 경례 : 사회자의 “국기에 대하여 경례”라는 구령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곡이 연주되며, 연주 중간에 진행자가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송(녹음설비 이용 가능)한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방법은 선 채로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가락을 가지런히 모으고 손바닥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거수경례를 하고, 제복을 입지 아니하고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경례곡 연주가 끝나면 행사 진행자의 “바로”라는 구령에 따라 경례를 마친다. 사회자의 “국기에 대하여 경례”라는 구령 후 경례곡이나 애국가 음원이 방송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5초 정도 지난 후 “바로”라는 구령에 따라 경례를 마친다.

② 애국가 제창 : 사회자의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진행에 따라 전주가 있는 애국가 반주에 맞춰 1절부터 4절까지 제창한다.

③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사회자의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이라는 구령에 따라 묵념곡에 맞춰 바른 자세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다. 묵념곡이 끝나면 행사 진행자의 “바로”라는 구령으로 묵념을 끝낸다.

2) 정식절차 2

① 국기에 대한 경례 : 정식절차 1과 동일

② 애국가 제창 : 정식절차 1과 동일. 다만, 전주가 있는 애국가 반주에 맞춰 1절만 제창한다.

③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정식절차 1과 동일

3) 약식절차 1

① 국기에 대한 경례 : 전주가 없는 애국가 반주 1절에 맞춰 실시한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음).

②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묵념곡을 연주하되 묵념곡이 없으면 구령으로 10~15초 정도 실시한다 (행사 성격에 따라 생략 가능).

4) 약식절차 2

① 국기에 대한 경례 :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에 맞춰 실시한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포함).

②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약식절차 1과 동일

5) 약식절차 3

① 국기에 대한 경례 : 구령으로만 실시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는다.

②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구령으로만 10~15초 정도 실시한다 (행사 성격에 따라 생략 가능).





태극기 자주 묻는 질문

CONTENTS

1. 태극기는 국경일만 게양할 수 있나요?
2. 태극기가 훼손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태극기는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나요?
4. 가정에서 태극기를 다는 방법은?
5. 복장에 태극기를 부착하는 경우 위치는?
6. 태극기를 기업의 생산 제품에 사용해도 되는지?
7. 태극기와 다른 기를 함께 게양할 경우?
8. 다른 기의 우선순위가 있는지?
9. 국기게양대의 높이가 왜 다르나요?
10. 국기의 규격 및 게양 시 다른 기와의 간격은?

1. 태극기는 국경일만 게양할 수 있나요?

-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의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 외에도 매일 · 24시간 게양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국기를 다는 날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 3 · 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6월6일), 국군의 날(10월1일)
- 국가장법에 따른 국가장기간
-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2. 태극기가 훼손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 읍 · 면 · 동 주민센터는 지역주민들이 오염되거나 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국기수거함을 설치 ·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본청 민원실 또는 읍 · 면 · 동 주민센터를 방문 하시면 국기수거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태극기는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나요?

- 태극기는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읍 · 면 ·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구입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 우체국 (www.epost.go.kr),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CU, GS25, 미니스톱은 지역별 · 일부 매장에서 판매

4. 가정에서 태극기를 다는 방법은?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담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위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기를 게양하실 때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 아파트 등 고층건물의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5. 복장에 태극기를 부착하는 경우 위치는?

- 태극기 관련 법령은 「대한민국국기법」, 「대한민국국법 시행령」 및 「국기의 게양 ·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위 법령에는 태극기를 복장에 부착하는 방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제복 등에 태극기를 부착하는 경우는 각 소관 부처에 문의하셔서 자체 규정 있을 경우 따라 주시되, 가급적 복장의 오른팔 상단부에 태극기를 부착하도록 하여, 앞에서 바라보아 태극기가 왼쪽에 오도록 함이 바람직합니다.

8. 다른 기의 우선순위가 있는지?

- 「대한민국국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국기 외 다른 기의 종류 및 그 기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다른 기의 게양 순서는 기의 역사성, 국민 통합성, 지역적 영향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기관에서 자체 판단하여 게양하여야 합니다.

6. 태극기를 기업의 생산 제품에 사용해도 되는지?

- 「대한민국국기법」 제11조 및 「국기의 게양 ·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국기 또는 국기 문양(태극과 4괘)은 국기를 선양할 목적인 경우에는 활용을 장려할 수 있으나, 국기의 기면을 훼손하거나 국민에게 혐오감을 줄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경우, 민간 기업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영리목적, 인지도 향상 등의 사적인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기 문양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업 등에서 생산하는 제품에는 국기 또는 국기 문양을 그대로 사용하시기보다는 국기 문양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말씀드립니다.

9. 국기게양대의 높이가 왜 다르나요?

-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와 같이 설치하는 경우는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기면의 너비(세로) 만큼 높게 설치해야 합니다.
- ※ 위 사항은 2008년 7월 17일 이후에 국기게양대를 새로 설치하거나 다시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10. 국기의 규격 및 게양 시 다른 기와의 간격은?

- 국기와 다른 기를 함께 게양할 경우는,
- 게양할 기의 총수가 홀수인 경우는 앞에서 게양대를 바라보아 국기의 왼쪽이 차순위, 국기의 오른쪽이 차차순 위로 하여 국기의 왼쪽이 오른쪽에 우선하여 번갈아 가면서 국기에서 멀어질수록 후순위가 됩니다.
- 게양할 기의 총수가 짝수인 경우는 앞에서 게양대를 바라보아 국기의 바로 오른쪽이 차순위, 그 다음이 차차순 위로 하여 국기에서 오른쪽으로 멀어질수록 후순위가 되도록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본 책자의 국기의 게양 방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의 규격은 특호부터 10호까지 호수별 표준규격이 있습니다.
※ 「대한민국국법 시행령」 제7조의 별표 1 참조
- 옥외에 국기를 게양할 경우 그 규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기관, 특별시, 광역시 · 도, 특별자치도의 청사는 3호기($270\text{cm} \times 180\text{cm}$) 이상
 - 시 · 군 · 자치구,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밖에 관할구역이 이에 상당하는 기관의 청사는 : 5호기($180\text{cm} \times 120\text{cm}$) 이상
 - 읍 · 면 · 동 및 그 밖에 관할구역이 이에 상당하는 기관의 청사에는 7호기($135\text{cm} \times 90\text{cm}$) 이상
- 국기게양대는 건물과 국기게양대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최소한 게양하는 국기의 가로 길이보다 넓게 하여 국기가 건물에 닿지 않도록 하며, 국기와 다른 기를 함께 게양하는 경우 그 간격은 기면의 길이(가로)보다 넓게 설치하여 서로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알파벳 순서에 따른 국가명칭

국기와 외국기 게양시 외국기의 게양 순서

※ UN 홈페이지의 UN 가입국 명단에 의함

1. Afghanistan
2. Albania
3. Algeria
4. Andorra
5. Angola
6. Antigua and Barbuda
7. Argentina
8. Armenia
9. Australia
10. Austria
11. Azerbaijan
12. Bahamas
13. Bahrain
14. Bangladesh
15. Barbados
16. Belarus
17. Belgium
18. Belize
19. Benin
20. Bhutan
21. Bolivia(Plurinational State of)
22. Bosnia and Herzegovina
23. Botswana
24. Brazil
25. Brunei Darussalam
26. Bulgaria
27. Burkina Faso
28. Burundi
29. Cambodia
30. Cameroon
31. Canada
32. Cape Verde
33. Central African Republic
34. Chad
35. Chile
36. China
37. Colombia
38. Comoros
39. Congo
40. Costa Rica
41. Côte D'Ivoire
42. Croatia
43. Cuba
44. Cyprus
45. Czech Repulic
46. Democratic People's Repulic of Korea
47.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48. Denmark
49. Djibouti
50. Dominica
51. Dominican Republic
52. Ecuador
53. Egypt
54. El Salvador
55. Equatorial Guinea
56. Eritrea
57. Estonia
58. Ethiopia
59. Fiji
60. Finalnd
61. France
62. Gabon
63. Gambia
64. Georgia
65. Germany
66. Ghana
67. Greece
68. Grenada
69. Guatemala
70. Guinea
71. Guinea Bissau
72. Guyana
73. Haiti
74. Honduras
75. Hungary
76. Iceland
77. India
78. Indonesia
79. Iran(Islamic Republic of)
80. Iraq
81. Ireland
82. Israel

83. Italy
84. Jamaica
85. Japan
86. Jordan
87. Kazakhstan
88. Kenya
89. Kiribati
90. Kuwait
91. Kyrgyzstan
92.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93. Latvia
94. Lebanon
95. Lesotho
96. Liberia
97. Libya
98. Liechtenstein
99. Lithuania
100. Luxembourg
101. Madagascar
102. Malawi
103. Malaysia
104. Maldives
105. Mali
106. Malta
107. Marshall Islands
108. Mauritania
109. Mauritius
110. Mexico
111. Micronesia(Federated States of)
112. Monaco
113. Mongolia
114. Montenegro
115. Morocco
116. Mozambique
117. Myanmar
118. Namibia
119. Nauru
120. Nepal
121. Netherlands
122. New Zealand
123. Nicaragua
124. Niger
125. Nigeria
126. Norway
127. Oman
128. Pakistan
129. Palau
130. Panama
131. Papua New Guinea
132. Paraguay
133. Peru
134. Philippines
135. Poland
136. Portugal
137. Qatar
138. Republic of Korea
139. Republic of Moldova
140. Romania
141. Russian Federation
142. Rwanda
143. Saint Kitts and Nevis
144. Saint Lucia
145.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146. Samoa
147. San Marino
148. Sao Tome & Principe
149. Saudi Arabia
150. Senegal
151. Serbia
152. Seychelles
153. Sierra Leone
154. Singapore
155. Slovakia
156. Slovenia
157. Solomon Islands
158. Somalia
159. South Africa
160. South Sudan
161. Spain
162. Sri Lanka
163. Sudan
164. Suriname
165. Swaziland
166. Sweden
167. Switzerland
168. Syrian Arab Republic
169. Tajikistan
170. Thailand
171.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172. Timor-Leste
173. Togo
174. Tonga
175. Trinidad & Tobago
176. Tunisia
177. Turkey
178. Turkmenistan
179. Tuvalu
180. Uganda
181. Ukraine
182. United Arab Emirates (U.A.E)
183.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184. United Republic of Tanzania
185. United States of America
186. Uruguay
187. Uzbekistan
188. Vanuatu
189. Venezuela (Bolivarian Republic of)
190. Viet Nam
191. Yemen
192. Zambia
193. Zimbabwe

태극기

발행년월 2017년 12월

발행처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화 (02) 2100-3077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본 책자의 PDF파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좌측 상단 '국가상징 알아보기' 배너를 통해 제공

The National Flag

